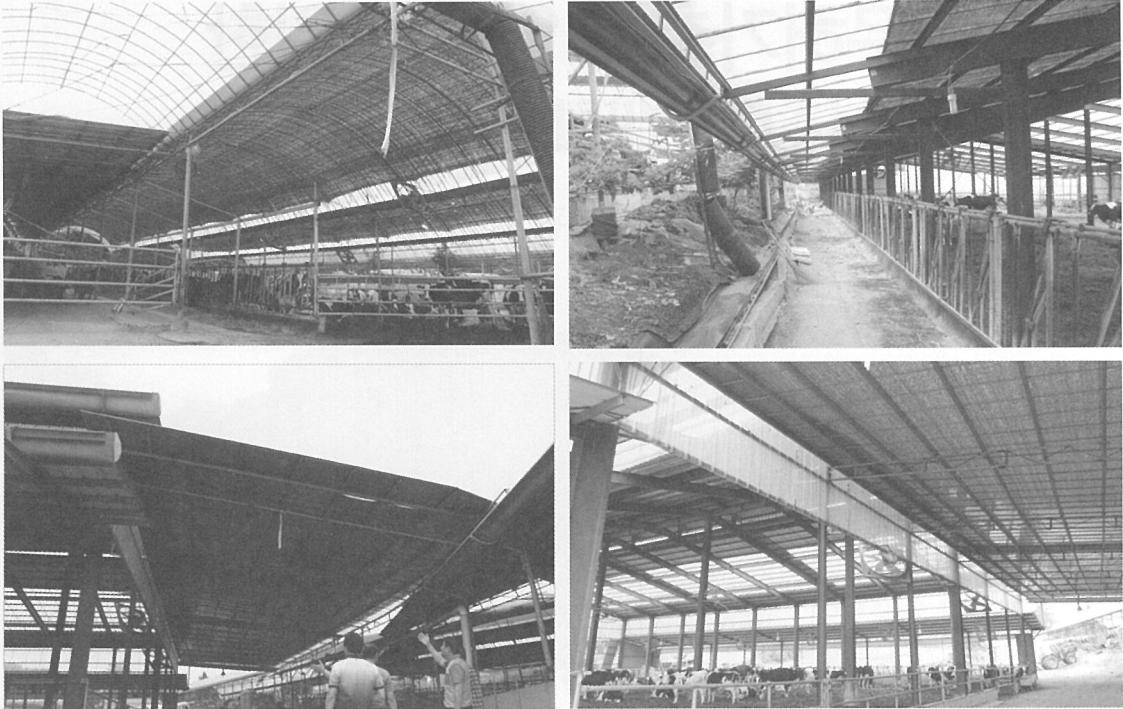


# 무허가축사 양성화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가속

6.30 무허가축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 및 토론 현장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핵심사항인 가설건축물 재질 및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국토부 측이 대책마련에 협조적인 자세로 전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와 한우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농협 및 축협,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쟁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실사와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인 관계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은 당진 지역 낙농목장을 방문하여 현장애로를 청취한 후 당진낙협 TMR공장에서 대책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현장실사 방문 목장들의 이모저모. 상단이 A 목장, 하단이 B 목장의 모습

첫 번째 방문한 A목장은 2004년 초 폭설피해 이후 축사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전체 800평의 축사면적 중 450평에 해당하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게 된 경우로, 이밖에도 여느 목장들처럼 축사와 축사를 지붕으로 이어붙이거나 사료 급이조의 비가림을 목적으로 쳐마를 연장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B목장은 전체 800평의 축사면적 중 가설건축물이 450평, 무허가축사시설이 140평을 차지하는 곳으로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신축한 축사가

문제였는데 관할시청에 허가신고를 하려면 이 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실사를 마친 후 가진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토론의 자리에서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강민수 사무관은 “국토부의 입장으로 그간 마련이 지연되었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 수준이지만, 시군조례·지침에도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 마련을 위해 금번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재차 만나 협의하기 전에 관련업계인 우리가 먼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최대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협회 기획조정실 한지태 부장은 축사의 처마와 축사간의 지붕으로 이어붙여 짓는 시설들은 비가림용 시설로 규정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후 운동장, 퇴비사 신축허용, 실질적인 이행강제금 감면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세부실시요령 마련이 지연된만큼 무허가 축사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목장들이 대부분 적법화 기회가 차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불법전용산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다수의 낙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법전용산지 임시 양성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9일 협회는 산지관리법 부칙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전용산지 임시양성화 특례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였고 농식품부에도 이를 공문으로 전달하여, 산림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취재 및 기사 : 교육홍보부 · 기획조정실〉

